

● 제32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2015)

2024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[강석주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01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강석주 의원 (찬성 31명)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8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 예우를 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(안 제 5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 취지 및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발의되었음.

〈표〉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(생략)	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당 지급액은 <u>월 15만원으로 한다.</u>	② ----- 월 15만원으로 하고, 80세 이상은 <u>월 20만원으로 한다.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2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가. 국가보훈제도의 운영 취지

-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해, 개인에게는 경제적·사회적 보상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사회구성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고 국가를 유지·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음.)

1) 송샘(2021). “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:공헌 유형별 보훈인식을 중심으로”. 한국보훈논총 20(4). 한국보훈학회.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,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음.

- 서울시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2012년부터 「서울시 보훈종합계획」을 수립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.

나.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지원현황

- ‘24년 6월말 기준 서울시에는 총 109,675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표〉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현황

(2024. 6월말 기준 / 단위 : 명)

구분	총계	독립 유공자	참전 유공자	4·19 유공자	5·18 유공자	특수임무 유공자	재일학도 의용군	고엽제 후유의증자	상이군경 (전상/공상)	공상 공무원	전몰순직 군경유족	무공 수훈자
총계	109,675	2,221	38,662	342	569	569	53	7,045	33,762	680	8,390	17,382
본인	66,355	1	38,662	156	471	387	1	7,045	16,581	324	0	2,727
유족	43,320	2,220	0	186	98	182	52	0	17,181	356	8,390	14,655

- 서울시에서는 총 5개의 보훈수당을 운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현황 ※ 중복지급 불가

구 분	보훈명예수당	참전명예수당	보훈예우수당	생활보조수당	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
지급대상	생존 애국지사	6.25, 월남전 참전유공자	4·19혁명유공자 5·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,공상군 경 공상공무원	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독립유공자 (손)자녀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어려운자
인 원	1명	37,500명	3,300명	4,100명	4,000명
지원금액	월100만원	월15만원	월10만원	월20만원	월20만원
예 산	26백만원	67,500백만원	3,960백만원	9,840백만원	9,600백만원

다. 서울시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2)에서 규정하고 있는 6·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자로서, 동법 제5조3)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함.

- 2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청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-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
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
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를 확인하고,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
-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하여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.
- 전체 보훈대상자의 규모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고령자가 많은 참전유공자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2015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전체 보훈대상자는 약 2%(약 18,457명) 감소한 반면, 참전유공자의 경우 약 29%(약 98,430명) 약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⁴⁾
- 2024년 6월 기준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 실지급 대상자는 36,053명이며, 이 가운데 80세 이상 지급 대상자는 18,277명으로 나타남.
- 지급기준과 관련하여,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 제5조⁵⁾에 근거해 6·25 전쟁 또는 월남자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37,5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.
-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2010년 3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.

※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연혁

3만원('10.7월)→ 5만원('14.1월)→ 10만원('19.1월)→ 15만원('24.1월)

4) 최현수 외(2023). 「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」. 대한민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

5)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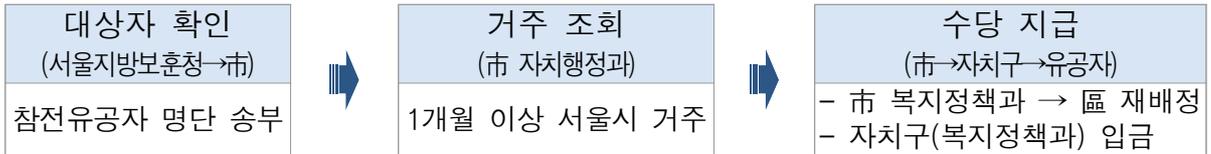
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,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(남부·북부 보훈지청장 포함)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.

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※ 2024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사업 주요 내용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지급대상 : 6·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37,500명
 ※ 만 65세 이상,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
- 지급기준 : 매월 개인별 150천원 지급 (24. 1월부터 인상)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

- 소요예산 : 67,500백만원

라.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

-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중에서 8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.
-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참전수당의 평균 지급액은 20.6만원으로 나타남.⁶⁾



[그림] 17개 광역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

6) 국가보훈부 보도자료(2024.6.25.), “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, 전년 대비 평균 12.5% 인상”

-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80세 미만과 다르게 참전 명예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〈표〉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차등지급 지자체 현황⁷⁾

지자체	지원기준	지원금액
광주광역시	65세 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	· 80세 이상 : 월 13만원 · 80세 미만 : 월 10만원
울산광역시	65세 이상 6·25 또는 월남전 참전자	· 80세 이상 : 20만원 · 80세 미만 : 15만원
제주특별자치도	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	· 80세 이상 : 월 25만원 · 80세 미만 : 월 15만원

-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필요한 예산은 778억 5천만원으로, 24년 예산 대비 103억 5천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.

〈표〉 참전명예수당 인상시 소요예산 추계

구 분	'25년 예산편성 인원	비용 추계
총 계	37,000명	77,850,000천원
65세 이상 80세 미만	18,250명	18,250명*12개월*150,000원 = 32,850,000천원
80세 이상	18,750명	18,750명*12개월*200,000원 = 45,000,000천원

라. 집행부서 의견 : 원안가결

-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, 그 예우를 다하고자한다는 점에서 원안에 동의하며,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임.

7) 서울시 내부검토자료, 24년 1월 기준

3 종합의견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의 취지를 고려하고,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,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의미를 가짐.
- 또한 서울시의 타 보훈수당과는 중복지급이 안되는 점, 타 시도의 지급수준을 고려할 때 그 인상액이 과하지 않은 점,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인상을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, 향후 지속적인 예산 소요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참전수당의 인상분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문 의 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